

제2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

일시 /장소	○ 일 시: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 장 소: - (서면심의)				작성자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		
					심의요청부서	OOOOO실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위원	청렴정책 총괄과장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심의방식	서면심의							
상정안건	제2026-72호	1. 최초 청구 및 결정사항 ○ 접수번호: 17145195 * 청 구 인 : ○○○(접수일: 2026. 7. 23.) * 청구내용 :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산·작성·보유한 검토자료 일체 등 * 부서 결정사항 :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 민원신청번호 오기 등으로 타인의 민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						
		2.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민원번호를 정정하여 정보공개청구 재검토 요청						
		3. 이의신청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 * 검토의견: 기각(세부사유 안건자료 참조)						
의견내용	[기각] ○ 기각 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비공개 결정의 전제가 된 민원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건 비공개 결정은 취소하고 정정된 민원번호를 기준으로 공개여부를 재심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의신청은 당초 청구 및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이며 다른 민원번호에 따른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달라는 것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신청인은 실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는 민원을 신청한 제3자의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이유·민원제기를 통해 달성하려는 점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민원 신청인 또는 관계자가 유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결정사항	○ 기각